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인가 취소 근거 마련〉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471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2
1.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인가 취소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인가 취소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 취소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제5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인가</u> 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4. <u>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u> 를 ----- ----- ----- ----- ----- ----- --
5. <u>인가</u> 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5. <u>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u> 를 ----- -----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11조제1항¹⁾),

인가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공사 시작 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완공 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제17조²⁾).

-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인가 취소를 규정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인가취소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대법원 판례³⁾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조성을 포

-
1.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3)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판시사항】

-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소정의 추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